

질문 · 서면 답변서

질문의원	강 석 주 위원	답 변	평창군수(임업경영과장)
회 의	제62회 평창군의회(정기회) `98 행정사무감사(제3일차) (p8. 12. 8 토)		
<p>【질문요지】</p> <p>○ 70년대 화전정리 조립 분수계약자료</p>			

【답변내용】

○ 70년대 화전정리 조립 분수계약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분수계약현황

□ 연료림 분수림조성 내역

구 분	필 지 수	면 적	분수조림기간	비 고
당초계약	148필	1,164.31ha	'69~79	
해약조치	118	1,023.35	'87. 12. 29	
재 계약	30	140.96	'93. 7. 31~ 2003. 7. 31	

□ 계약기간내 조치할 사항

설정기간이 만료되어 수익의 분배가 끝나지 아니할 때에는
 속성수·관상수 - 20년, 유실수. - 25년, 장기수 - 70년을 초과하지 않은
 범위 안에서 1차 한하여 연기가능(산림법 시행령 제85조)

□ 계약종료 후 수확시 이익 배당 사항

○ 수익의 분배는 조림·육림비용 과수제배 비용 또는 관상수 생산비용
 을 참작하여 정하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에 대한 분배비율은 수익
 의 9할로 함. (산림법 시행령 88조)